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우) 121-887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7 오벨리움 2층 / 전화 : (02) 2279-1704~6 / 전송 : (02) 2279-1719 /
E-mail : eun0726@ngokcoc.or.kr / http://www.ngokcoc.or.kr/ 사무총장: 윤현봉/ 센터장: 이성훈/ 담당자: 전지은

문서번호 KCOCA-14007호

시행일자 2014. 04. 14

(경 유)

수 신 수신인 참조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	
처	리		공	
리	과		람	
과				
담				
당				
자				

제 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KCOC의 의견서 송부의 건

1. 귀 의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는 해외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협력사업을 하는 108개 시민사회단체(NGO)의 협의체입니다.
3. 해외긴급구호 파병 국회사후 동의 개정안을 포함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 협의회에서 검토하여 의견서를 송부 드리오니, 참조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정책센터 전지은 대리 (070-7477-1062, eun0726@ngokcoc.or.kr)
대외협력팀 김민희 대리 (070-7477-1076, mhkim@ngokcoc.or.kr)

첨부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KCOC의 의견서 1부 . 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 이세훈



수신처 :

국회의통위 안홍준, 정문헌, 심재권, 김영우, 심윤조, 원유철, 윤상현, 이병석, 이자스민, 정병국, 정의화, 조명철, 황진하, 김성곤, 김한길, 박병석, 박상호, 원혜영, 유인태, 인재근, 정청래, 홍익표, 문대성, 박주선의원실.

국회국방위 유승민, 김종태, 안규백, 김성찬, 손인춘, 송영근, 유기준, 유정복, 정두언, 정희수, 한기호, 김광진, 김재윤, 김진표, 백군기, 이석현, 진성준의원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KCOC의 의견서

지난 2013년 12월 30일 손인춘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정부의 결정으로 긴급 파병을 하고, 파병 후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제11조의 2 신설).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를 시행하는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에서 해당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긴급구호 시 군대 파병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회의 동의없이 군대를 파병하는 법률은 국제적인 기준에 어긋남.

-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해외 군/소방(민방위)재원이용에 관한 국제지침'(일명 오슬로 가이드라인)과 UN 인도주의사무기구 상설위원회(IASC)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군/민방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군 병력은 현존하는 구호 매커니즘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수혜국 정부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 된 기준에 따르면 긴급구호의 상황에서는 민간단체 및 국제전문단체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군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기에, 국회의 동의 없이 긴급하게 군대를 파병하는 법률은 국제적인 기준에 어긋남.

2. 현존하는 법률로도 긴급구호 상황 발생 시 군 자원을 활용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활동은 국회의 동의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현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신속한 긴급구조 구호 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을 파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9조 2항)
- 추가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에 군 인력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군대 파병이 갖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3. 따라서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군 병력의 파견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을 허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 실질적 효용성 및 타당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끝.

첨부. KCOC 소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 Development Cooperation)는 1999년에 설립된 한국 국제개발NGO의 협의회로, 108개 회원단체가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COC 회원단체 명단 (2014년 4월 기준)

No.	단체명	No.	단체명
1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	55	월드디아코니아
2	경희국제의료협력회	56	월드샤프
3	고앤두 인터내셔널	57	월드쉐어
4	광성	58	월드투게더
5	국경없는교육가회	59	웰인터내셔널
6	국제개발협회	60	위드
7	국제사랑의봉사단	61	위스타트운동본부
8	국제아동돕기연합	6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9	국제옥수수재단	63	이웃을돕는사람들
10	국제의료협력단	64	인구보건복지협회
11	굿네이버스	65	장미회
12	굿피플 인터내셔널	66	전국재해구호협회
13	그린티처스	67	정해복지
14	글로벌 투게더	68	지구촌공생회
15	글로벌케어	69	지구촌나눔운동
16	글로벌호프	70	청수나눔실천회
17	기쁜우리월드	71	캠프
18	나눔인터내셔널	72	코피온
19	다일복지재단	73	태평양아시아협회
20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74	태화복지재단
21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75	팀앤팀
22	더 멋진 세상	76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23	더프라미스	77	푸른아시아
24	덴탈서비스인터내셔널	78	프렌드아시아
25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79	플랜한국위원회
26	동서문화개발교류회	80	피스빌리지네트워크
27	라파엘클리닉인터내셔널	81	하나로
28	로터스월드	82	하트하트재단
29	메디피스	83	한국YMCA전국연맹
30	밀알복지재단	84	한국건강관리협회
31	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85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32	방글라데시개발협회	86	한국국제봉사기구
33	부스러기사랑나눔회	87	한국헬프에이지
34	비전케어	88	한국선의복지재단

35	사랑나눔의사회	89	한국월드비전
36	삼동인터내셔널	90	한국인권재단
37	새마을운동중앙회	91	한국자유총연맹
38	샘복지재단	92	한국제이티에스(JTS)
39	생명누리	93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40	서비스포피스	94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
41	세계선린회	95	한국해비타트
42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96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43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97	한국희망재단
44	아테나문화사업회	98	한끼의식사기금
45	아름다운가게	99	한마음한몸운동본부
46	아름다운동행	100	한민족복지재단
47	아시아포커스	101	한베문화교류센터
48	아시아협력기구	102	한베재단
49	아프리카미래재단	103	한울안운동
50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104	함께일하는재단
51	어린이재단	105	함께하는사람들
52	에코피스아시아	106	호산나
53	엔젤스헤이븐	107	환경재단
54	열매나눔인터내셔널	108	휴먼인러브

끝.

발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문의	전지은 정책센터 대리 (070-7477-1062, eun0726@ngokcoc.or.kr) 김민희 대외협력팀 대리 (070-7477-1076, mhkim@ngokcoc.or.kr)
제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KCOC의 의견서
날짜	2014년 4월 14일